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독·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및 홍보·지도 요청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2.17.)과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라 축산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이 「농지법」상 '축사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전용 시설에 해당되어 향후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관련 부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24.2.17. 시행)

구분	기 준	변 경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b>위생시설</b> , 가축 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다. (생략)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b>위생시설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b> ,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 운동장

3.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양돈 농가 8대 방역시설 등이 적법화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에서는 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양돈농가를 포함한 전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동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방역부서에서는 동 개정 사항을 축산부서에도 통보 협조

붙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내용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한국흑염소협회, 사단법인 한국사슴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무관 김승만 구제역방역과 전결 2024. 2. 19.  
장 김정주

협조자 사무관 이주원

시행 구제역방역과-1265 (2024. 2. 19.)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63 팩스번호 044-868-0628 / ksm9581@korea.kr / 비공개(5)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